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

미래한강본부

총 3건 건의

목 록

연 번	건의제목	건의부서
1	시·도지사의 하천점용허가 확대	총무부 (기획예산과)
2	한강갑문 수로준설 관련 항만법 시행령 개정	한강전략 사업부 (서울항조성과)
3	하천법상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요건 완화	한강여가 사업부 (수상여과과)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건의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1. 시·도지사 하천점용허가 확대 (기획예산과, '23.8.2.)</p>	<p><input type="checkbox"/>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하천 관련 사업 추진시,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실시설계 이후 환경부의 하천점용허가 절차 필요 <p><input type="checkbox"/>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의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불허가 될 경우 과도한 매몰비용 발생 <p><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점용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 건의 <p><input type="checkbox"/>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현행</th> <th style="width: 50%;">개선(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p>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1.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생략)</p> <p>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p> </td> <td style="padding: 5px;"> <p>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좌동)</p> <p>1.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좌 동)</p> <p>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p>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선(안)	<p>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1.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생략)</p> <p>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p>	<p>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좌동)</p> <p>1.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좌 동)</p> <p>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p>	<p>(환경부)</p>
현행	개선(안)					
<p>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1.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생략)</p> <p>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p>	<p>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좌동)</p> <p>1.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좌 동)</p> <p>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p>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2. 한강갯문 수로준설 관련 항만법 시행령 개정 (서울항조성과, '23.8.2.)</p>	<p>□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아라뱃길 한강 갯문 앞 구역은 토사가 반복 퇴적됨에 따라, 선박의 안전 운항 위해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필요 <p>□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갯문은 갯문 내외를 선박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므로 외측 수로구간 준설은 한강갯문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실시함이 타당함 <p>□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법 시행령」 별표 1 개정(경인항 수상구역 변경)을 통한 한강 갯문 앞 수로 관리주체 이관(서울시→해양수산부) <p>□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법 시행령」 별표 1 <table border="1" data-bbox="571 1288 1212 1995"> <thead> <tr> <th data-bbox="571 1288 890 1332">현행</th> <th data-bbox="890 1288 1212 1332">개선(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71 1332 890 1995"> <p>별표 1. 경인항 <생략></p> </td> <td data-bbox="890 1332 1212 1995"> <p>별표 1. 경인항 북위 37도 36분 08.17초, 동경 126도 48분 05.61초와 북위 37도 36분 08.46초, 동경 126도 48분 22.77초와 북위 37도 36분 06.89초, 동경 126도 48분 25.65초와 북위 37도 35분 56.71초, 동경 126도 48분 25.92초와 북위 37도 35분 56.57초, 동경 126도 48분 18.56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59.87초, 동경 126도 47분 59.52초와 북위 37도 35분 59.21초, 동경 126도 47분 59.87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면</p>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선(안)	<p>별표 1. 경인항 <생략></p>	<p>별표 1. 경인항 북위 37도 36분 08.17초, 동경 126도 48분 05.61초와 북위 37도 36분 08.46초, 동경 126도 48분 22.77초와 북위 37도 36분 06.89초, 동경 126도 48분 25.65초와 북위 37도 35분 56.71초, 동경 126도 48분 25.92초와 북위 37도 35분 56.57초, 동경 126도 48분 18.56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59.87초, 동경 126도 47분 59.52초와 북위 37도 35분 59.21초, 동경 126도 47분 59.87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면</p>	<p>(해양수산부)</p>
현행	개선(안)					
<p>별표 1. 경인항 <생략></p>	<p>별표 1. 경인항 북위 37도 36분 08.17초, 동경 126도 48분 05.61초와 북위 37도 36분 08.46초, 동경 126도 48분 22.77초와 북위 37도 36분 06.89초, 동경 126도 48분 25.65초와 북위 37도 35분 56.71초, 동경 126도 48분 25.92초와 북위 37도 35분 56.57초, 동경 126도 48분 18.56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59.87초, 동경 126도 47분 59.52초와 북위 37도 35분 59.21초, 동경 126도 47분 59.87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면</p>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3. 하천법상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요건 완화 (수상여가과, '23.8.2.)</p>	<p>□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법상 '하천'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지역으로 되어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광고물 표시 금지구역으로 제한 <p>□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빛섬의 경우 국제 컨벤션, 복합수상문화공간 운영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일체의 상업광고가 금지되어 공간 활성화 및 시민들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에 제약이 있으며, 유도선장 등의 수상시설물도 다양한 문화, 레저 제공에 필요한 홍보활동 필요함 <p>□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구역인 하천 규정을 하천구역(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중 보전·복원지구에 한하여 금지하고 친수지구에는 옥외광고물 허용하도록 건의 <p>□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table border="1" data-bbox="571 1630 1214 1966"> <thead> <tr> <th data-bbox="571 1630 890 1668">현행</th> <th data-bbox="890 1630 1214 1668">개선(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71 1668 890 1966"> <p>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p> <p>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 다. (생략)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p> </td> <td data-bbox="890 1668 1214 1966"> <p>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p> <p>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 다. (생략)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중 <u>보전지구 및 복원지구</u></p>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선(안)	<p>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p> <p>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 다. (생략)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p>	<p>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p> <p>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 다. (생략)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중 <u>보전지구 및 복원지구</u></p>	<p>(행정안전부)</p>
현행	개선(안)					
<p>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p> <p>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 다. (생략)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p>	<p>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p> <p>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 다. (생략)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중 <u>보전지구 및 복원지구</u></p>					